

# 홈택스를 이용한 지급명세서('18년 귀속) 전자제출 안내

-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.
- 2019년 2월은 귀사에서 2018년 중에 근로자 등에게 각종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내역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달입니다.

홈택스(<https://www.hometax.go.kr>) 전자제출 서비스를 이용하여 2018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2019년 2월 28일까지 편리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다만, 근로소득·퇴직소득·사업소득·종교인소득 등 지급명세서는 3월 11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)

-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,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용(사업자번호, 주민번호, 소득종류, 귀속연도, 지급액 등)이 잘못 작성된 경우 지급금액의 1%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이자소득·배당소득·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: 2월 28일까지
- 근로·퇴직·사업(봉사료 포함), 종교인소득 등 지급명세서 : 3월 11일까지  
(단, 일용근로소득은 2월 28일까지)



- 홈택스 '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'와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은 지급명세서 작성·제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작성 오류를 줄일 수 있어 유용합니다.

## 홈택스 회원가입 방법

홈택스 가입방법  
(①, ② 중 선택)

-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(<https://www.hometax.go.kr>)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
- 세무서를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·제출하여 사용자아이디(ID)·비밀번호를 등록

## 홈택스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

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 
직접 작성하여 전자제출

- 홈택스 로그인 → 「신청/제출」 → 「(근로·사업 등)지급명세서」  
→ 해당 지급명세서 클릭 → 「직접작성제출방식」  
→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('Step1. 과세자료제출')  
→ 「Step2. 제출내역」에서 접수결과 확인

상용(자가) 프로그램으로  
작성한 지급명세서를  
홈택스에서 변환하여  
전자제출

- 홈택스 로그인 → 「신청/제출」 → 「(근로·사업 등) 지급명세서」  
→ 해당 지급명세서 클릭 → 「변환제출방식」 → 「변환대상파일선택」  
→ 「파일형식검증하기」 → 「내용검증하기」 → 「전자파일제출 이동」  
\* 「검증결과확인」 클릭하여 형식검증, 내용검증 결과를 확인, 오류가 없으면 다음단계로 이동  
→ 「제출하기」 → 「Step2. 제출내역」에서 접수결과 확인

\* 상용(자가)프로그램은 반드시 2018년 귀속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\*에 따라 제작

\* 홈택스 하단 [자료실]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([www.nts.go.kr](http://www.nts.go.kr))의 [국세정보] - [국세청프로그램] 참조

## 홈택스 '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'를 이용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· 제출

- 상용(자가)프로그램이 없는 회사(근로자 1천명 이하)는 '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'를 이용하면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간편하게 작성 ·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〈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한 지급명세서 작성 · 제출 절차〉

(회사) 근로자의  
연말정산 기초자료  
등록

(근로자) 공제신고서나  
간소화자료를 회사에  
온라인 제출

(회사) 제출된 공제  
신고서 검토, 지급명세서  
전산 작성 · 제출

※ 상세한 설명은 홈택스 홈페이지 하단 [공지사항]의 「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출 매뉴얼(사업자용)」 참고

## 홈택스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시 유의 사항

- 해당 제출 기간 내에 동일 자료를 여러 번 전송한 경우에는 **최종 전송한 자료만을 유효한 자료로 인정**합니다.
- 「수시제출」로 제출한 소득자를 「연간합산제출」에 포함해서 제출하면 소득자가 중복 제출되므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각 소득별 **소득의 종류, 조세특례 등 코드, 세율, 세액 등 입력이 정확**하게 될 수 있도록 **유의**하시기 바랍니다.  
(예:비영업대금의이익 ⇒ 소득의종류 22, 조세특례 등 코드 NN, 세율 25% 정확히 입력)
- 「검증결과확인」에서 오류가 있어 **확인할 사항으로 분류된 자료**에 대해서는 정확히 **수정하여야 제출**됩니다.

※ 제출완료 여부는 「제출내역」화면에서 반드시 접수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## 연말정산 상담 전화

- 홈택스 연말정산(이용, 세법) 상담 : 국세청상담센터(☞ 국번없이 126 ➔ ⑤ ➔ ①, ②)
- ARS 연말정산세법 안내 : 국세청상담센터(☞ 국번없이 126 ➔ ② ➔ ③)

국세청상담센터

국번없이



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  
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.



국 세 청  
National Tax Service